

『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양진오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「식물방역법」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예찰·방제단 설치(안 제1조~제3조)

나.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, 임무(안 제4조~제6조)

다. 예산지원 및 교육, 예비비, 사무의 위탁(안 제7조~ 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식품방역법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3. 4. ~ 3. 11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은

- 기후변화와 재배 작물의 다양화, 국가 간 교역 확대 등으로 외래·돌발 병해충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「식물방역법」에 의거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-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방제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